

제267회 임시회
2008. 2. 1(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2. 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규완 의원의 6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1월 14일

○ 회부일자 : 2008년 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29)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이규완 의원)

가. 제안이유

-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도민의 경제분야 관심 고조 및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경제교육 기본원칙(안 제3조)

- (1) 경제교육은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
- (2) 특정 단체 등의 이익 옹호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됨
- (3) 지역·성별·나이 등에 구애됨이 없이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

○ 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안 제4조)

- (1) 중앙계획과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경제교육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안 제5조)

- (1) 협의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협의
- (3) 단체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4)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교육센터장이 됨.

○ 경제교육센터 지정(안 제7조)

- (1)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실비보상 등(안 제8조)

- (1)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최영배)

-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는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도민들의 관심과 체계적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올바른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형식적인 조문이 아닌 도민의 경제교육에 필요한 명확한 교육주체,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등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금융, 소비 및 신용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 된 지식의 습득과 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관련단체”란 경제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다. 경제교육관련 단체의 연구원

라. 그 밖에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경제교육관련 기본계획과 지역별 특색 등을 고려하여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와 경제교육관련 단체간,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교육관련단체 대표 또는 직능단체 대표
2. 노동자·사용자·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4. 경제특별도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⑤ 단체 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교육센터장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제교육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경제교육관련 기관·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제교육센터의 운영 등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구성된 충청북도경제교육센터와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지정·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